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시험 업무 수당
지급 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3420호
2. 발 의 자 : 박상혁 의원
3. 발의일자 : 2026년 2월 9일
4. 회부일자 : 2026년 2월 12일

II.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시험 업무 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험 업무 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안 제1조)
- 시험 업무 수당 지급 대상 및 기준액을 규정(안 제2조)
-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여비 지급 사항을 규정(안 제3조)
-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안 제4조)

IV.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 입법예고(2026. 2. 20. ~ 2. 24.) 결과 : 의견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박광선)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6년 2월 9일 박상혁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3420호로 발의되어 2026년 2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 동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시험 업무 수당과 여비에 관한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검토의견

가. 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현행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의 실시 원칙·절차·방법 등을 규정하면서, 시험위원·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¹⁾.
- 그러나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를 별도 조례가 아닌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에 근거하여 시험수당을 지급하고 있음²⁾.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시험위원 등) ① ~ ④ (생략)

⑤ 시험위원·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위원·시험관리관·채점요원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예산의범위에서 정한다.

2)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14조(시험수당 등 지급)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1. 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인쇄·보안·채점 등에 종사하는 사람
2. 시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이처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장기간 입법되지 아니하여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필수 자치법규 미정비 현황’에 해당 사항이 공개되는 등 입법불비에 대한 위법성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³⁾.
- 따라서 동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위임사항을 이행하고 시험업무 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위임 사항의 이행 의무와 함께 입법 불비에 따른 위법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위임 취지에 부합하는 입법 조치로 판단됨.

나. 주요 조문별 검토

1) 조례안 체계

- 동 조례안은 총 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는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조 및 안 제3조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위임한 시험 관계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교육감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조례안은 위임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문 구성과 체계는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제시하는 체계성·간결성 원칙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필수 자치법규 미정비 현황’,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 관련 조례 미정비 사항 확인(2026. 2.13. 기준).

2) 적용 대상의 범위에 대한 검토(안 제1조)

- 안 제1조는 동 조례안의 목적규정으로 지방공무원 중 교육전문직원을 제외한 시험 업무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현행 법체계상 지방공무원의 임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각각 별도로 규율되고 있는바⁴⁾,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동 조례안의 적용범위에 교육전문직원을 제외하는 것은 법체계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타당함.
- 이처럼 안 제1조는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함께 적용범위를 함께 규정함으로써 동 조례안의 목적과 대상을 일치시켜 규범의 예측 가능성과 함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별도 문제는 없음.

3) 시험 업무 수당 지급 대상 및 기준에 대한 검토(안 제2조)

- 안 제2조는 문제 출제·심사·선정·채점·인쇄·편집, 면접시험, 시험 감독·관리 등 시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수당 지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1항), 수당 지급 기준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제2항).

4) 「교육공무원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2.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
 3.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
- ② ~ ⑩ (생략)

제10조(임용의 원칙)①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그 자격,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 한다.

②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 우선 안 제2조제1항은 현재 시험 관계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법적근거인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인바, 실질적인 적용 범위의 확대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규범 체계를 정비하려는 취지로 타당성이 인정됨.
- 다음으로 안 제2조제2항은 수당 지급 기준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아니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의 탄력적 운용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의 효율성과 집행의 신속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다 할 것임.

4) 여비 지급 기준에 대한 검토(안 제3조)

- 안 제3조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경우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직급 기준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한편, 「공무원 여비 규정」 제30조 및 같은 규정 별표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 지급 기준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업무의 성격 및 동반 공무원의 직위 등을 고려하여 기관장이 지급등급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⁵⁾.

5) 「공무원 여비 규정」

제30조(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공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이 영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 구분은 별표 9에 따른다.

- 이와 관련하여 현행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 14조제2항에서도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경우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안 제3조는 기존 운영 기준을 조례로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음⁶⁾.
- 또한, 타 시·도교육청 운영 사례를 보면, 4급 상당 기준을 명시하거나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기준을 준용하는 등 유사한 방식으로 여비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표-1] 타 시·도교육청 시험 수당·여비 지급 기준 현황

(기준일: 2026..2.13.)

구분	여비 지급 방식	해당 교육청
직급 기준 명시	4급 상당	경기, 대구, 대전, 울산
별표 기준 준용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강원, 경북, 세종
직급 기준 없음	예산 범위 내 지급	인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를 종합하면, 안 제3조는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여비 지급 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이며, 통상적인 운영 수준에 해당하는 입법 형식으로 판단됨.

[별표 9]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여비 지급 구분표(제30조 관련)

해 당 자	지 급 기 준
1. 공무원의 배우자	배우자인 공무원의 여비 지급등급
2. 사립학교의 교원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른 국공립학교 교원의 여비 지급등급을 준용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원·직원	가. 임원: 별표 1 제1호라목의 여비 지급등급 나. 가목 외의 직원: 별표 1 제2호의 여비 지급등급
4. 민간기업체의 임원·직원	공공기관의 임원·직원과 비교되는 직위 및 업무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출장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여비 지급등급
5. 그 밖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	업무의 성격, 동반 공무원의 직위 및 해당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출장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여비 지급등급

6)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4조(시험수당 등 지급)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1. 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인쇄·보안·채점 등에 종사하는 사람
2. 시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안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 제5항의 위임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입법 공백 해소 및 운영상의 탄력성 확보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행정관 리담당관-2277, 2026.2.20.).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시험 업무 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지원팀장	정진국(2180-8263)	입법조사관	이현주(2180-8272)
----------	----------------	-------	----------------